



오리통관 관련규정

관세법

제93조(특정물품의 면세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.〈개정 2002.12.18〉

1. 동식물의 번식·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

관세법 시행규칙

제43조(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) ①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종마(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), 중양, 종축용 오리, 종토, 종축용 링크, 종축용 여우, 양식용 실뱀장어, 종폐용 진주조개, 진주양식용 핵, 종폐용 굴 치페(그 유생을 포함한다),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(호밀·귀리·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)와 종묘개량용 우렁쉥이의 어미 및 종묘, 양식용 돈 및 농어(수정란을 포함한다)로 한다.〈개정 2002.5.10〉

제44조(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) ① 법 제93조제1호·제2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승인·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사후관리에 관한고시

제1~3조(사후관리물품) ①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 및 별표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
2. 법 제89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
3.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
4.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종교용품 등. 다만, 법 제91조제3호내지 제5호의 물품은 제외한다.
5.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품. 다만, 법 제93조제1호, 제3호내지 제15호 및 제17호 내지 제18호의 물품은 제외한다.〈개정 2004.12.31〉
6. 법 제95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가목의 규정의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,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·기초설비품. 다만, 금형 및 법 제95조 제1항제4호 중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
7.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
8. 조세특별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
9. 조세특별제한법 제121조의3, 제120조의10 및 제12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
10. 법 제88조제2항,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
11. 관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
12. 기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령·조약·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중 법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의 사용 등 확인이 필요한 물품